

1. 개정이유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 허가에 필요한 전속운송계약 체결 여부 확인 및 차량이력관리 업무 등을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수행중이나 명확한 근거 없이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명확한 근거 마련을 통해 신규사업자 진입 등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용어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 하는 등 그간 규정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번호판 관리 업무 수수료 근거 신설 및 수수료 산정절차 등 마련
(안 제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나. 화물자동차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제3조 및 제7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소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별표 1과 같다”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영업소”를 “영업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제4항 전단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 ⑦ 제6항의 비용은 관리 대상 차량 대수, 서비스 수준,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감안하여 택배 운송사업자, 한국통합물류협회 등이 포함된 협의체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 ⑧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제6항에 따른 수입·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하며, 수입·지출 내역을 제7항에 따른 협의체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별표 1을 삭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u>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소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u>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이하 “택배”라 한다)의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p> <p>제3조(시설 및 장비요건) 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이란 <u>별표 1과 같다.</u></p> <p>② (생략)</p> <p>제7조(허가 후 관리 등) ① 택배 운송사업자는 택배 운송만을 담</p>	<p>제2조(적용범위) ----- ----- ----- ----- ---- <u>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u> ----- ----- ----- ----- ----- ----- ----- ----- -----.</p> <p>제3조(시설 및 장비요건) ① ----- ----- ----- ----- ----- <u>「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허가 후 관리 등) ① ----- -----</p>

당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운송업무 및 수수료 지급 등 관련 사항을 영업소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신설>

<신설>

<신설>

----- 영
업점-----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제4항 전단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비용은 관리 대상 차량 대수, 서비스 수준,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감안하여 택배 운송사업자, 한국통합물류협회 등이 포함된 협의체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⑧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제6항에 따른 수입·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하며, 수입·지출 내역을 제7항에 따른 협의체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한다.